인천광역시검단구

미래의 중심도시
수도권의 새로운 심장
검단구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(3차) 통지 공시송달 공고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,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,
3.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당이 불가능함에 따라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따라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행위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공고내용: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(2차) 공시송달 공고
나. 공고기간: 2026. 11. 2. ~ 2026. 11. 23.
다. 공고장소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
라. 법적근거: 「하천법」 제33조 및 제69조
마. 공시송달 내용: 공고문 참조

붙임 1.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.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. 끝.

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

인천광역시검단구 청장의인

수신자 전구시군구

주무관	정아영	하수하천관리 팀장	장덕주	도시관리과장	전결 2026. 10. 30. 유명근

협조자

시행 도시관리과-8038 (2026. 10. 30.) 접수

우 23543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125번길 12, (당하동) / https://www.geomdan.go.kr
전화번호 032-726-7277 팩스번호 032-726-7961 / dkdudmong@korea.kr / 대국민 공개